

문서번호	도로관리과 -101468
결재일자	2015.11.23 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도로팀장	도로관리과장	건설안전교통 국장	부구청장	
윤형철	代김정훈	김기용	정명수	11/23 하철승	
협 조					

**『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』
재구성 및 운영계획**

2015.11.23.

**강 북 구
[도로 관리 과]**

「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」 재구성 및 운영계획

2015년 11월 21일부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임기(2년)완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, 자문위원 위촉 등 자문위원회 및 설치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함

I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II 자문위원회 재구성 및 위촉

위원회 구성

- 위 원 수 : 총 20명
- 조직구성 :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, 자문위원 17인(내부2, 외부 15)
 - 당연직 : 5인(부구청장, 도시관리국장, 건설안전교통국장, 도로관리과장, 안전치수과장)
 - 외부위원 : 15인
- 자문위원 명단 : [붙임1]
 - 당연직 5인, 신규위촉 5인, 연임 10인
 - 분야별 구성

당연직	주민대표 (구의원)	도로,구조,시설물, 토질및기초	상하수도, 수자원	교통	조경	건축
5	2	7	3	1	1	1

위원회 기능

- 건설공사 설계 및 변경설계에 대한 기술적 자문
- 교량 등 공공 시설물 유지관리상 기술적 자문
- 공공 하수관거(관경 D900mm · 단면적 0.7㎡미만)의 주요 시설변경 자문
- 새로운 기술, 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 등

위원임기 : 2년(연임가능)

- 공무원인 위원 : 해당 직에 있는 기간
-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: 전임위원 임기중 남은 기간

Ⅲ 자문위원회 운영

위원회 개최방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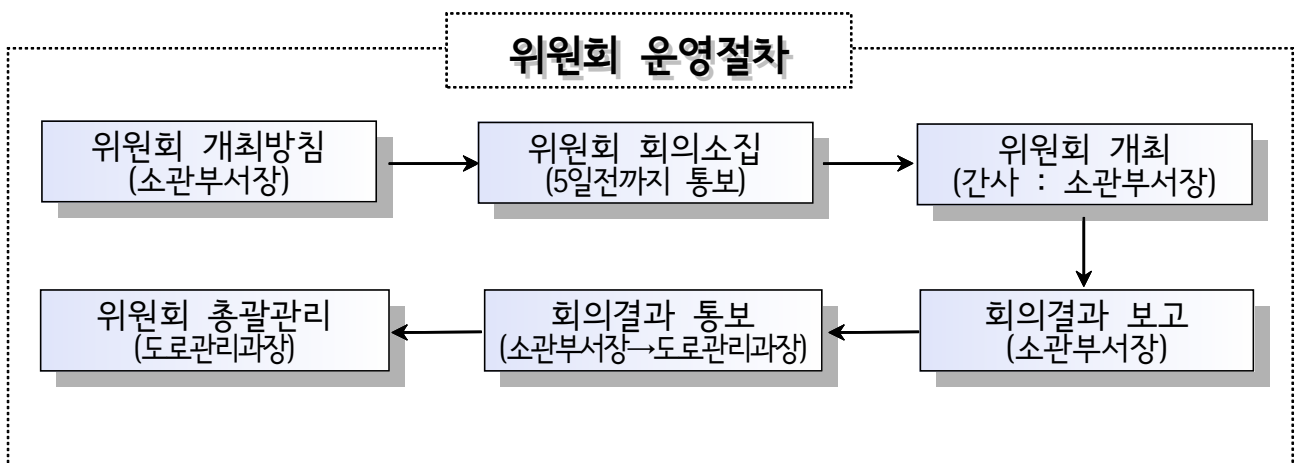
- 자문대상이 있는 소관부서장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개최방침 수립
 - 건설공사 설계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상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
 - 강북구 건설기술용역 시행시 중요사항 있을 경우 등

회의 소집

-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
 - 소관부서장은 자문위원에게 회의일시·자문안건 등 사전통보(회의 5일전까지, 긴급안건 예외)
 -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4명이상 10명이내 소집
 - 해당 건설기술 분야의 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
- ※ 위촉된 건설기술 분야 이외 자문 필요시 : 서울시 심의·자문위원 활용

□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

- 위원장(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 직무대행)은 위원회의 사무 총괄
 - 간사(소관부서 과장) : 자문안건 설명 및 답변
 - 서기(소관부서 팀장) : 회의록 작성[붙임2]
⇒ 회의 개요, 참석위원 명부, 자문 주요내용 등
- 자문위원은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의견서 제출
- 자문 안건과 관련되는 해당 지역내 주민 대표 등을 참석하게 하여 주민 의견이나 건의사항 청취 가능
- 자문을 위하여 현장조사, 공무원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가능
- 소관부서장은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후 주관부서(도로관리과) 통보



□ 자문수당 지급

-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, 주민대표 참석수당 지급
 - 세입·세출예산 편성계획(자율편성경비 편성기준)
→ 기본(2시간 이내) : 참석수당 70천원, 2시간 초과 : 100천원
-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 : 미지급

□ 자문의견 조치

-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 자문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 면밀히 판단하고, 반영이 어려운 경우 사유 기재하여 별도관리

IV 향후계획

- 2015. 11월중 : 외부 위원 위촉장 제작 및 전달
- 회의 운영일 : 자문대상 안건 발생시

따로 붙임 : 1.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명단 1부.
2.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양식 1부. 끝.